

영등포구의회  
제1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6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정(제안)이유

이 제정조례안은 단일법으로 구성된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분야별·기능별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의 법으로 분법되면서 그 시행일이 2011년 1월 1일로 이에 따른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 3.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 1) 구세 세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2) 부과·징수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3) 송달 방법(안 제9조~안 제10조)

### 나. 제2장 부과징수

- 1)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안 제12조)
- 3) 시세와 구세 징수 순위(안 제13조)

- 4)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5) 공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6) 납기 전 징수와 압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7) 구제 환급금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안 제20조)
- 8)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안 제23조)
- 9)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안 제25조)

#### 다. 제3장 체납처분

##### -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 1)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안 제28조)
- 2) 수색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3) 질문 및 검사권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4)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5)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안 제34조)

##### - 제2절 처분

- 6)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7) 공매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안 제37조)
- 8) 배분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9)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9조)

##### -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 10) 회생절차 중의 조세 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0조~안 제46조)

#### 라. 제4장 보칙

-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안 제48조)
-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9조~안 제5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방세제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하고, 과도한 납세·징세 비용을 절감하고자 3개 법으로 분법(2010.3.31 공포, 2011.1.1 시행) 되면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임

### - 지방세법 분법 체계

#### 현행 (1개 법, 3개 자치법규)

|      | 법                               | 자치법규         |
|------|---------------------------------|--------------|
| 지방세법 | 제1장(총칙)                         | ○구세 조례       |
|      | 제2장(도세)<br>제3장(시군세)<br>제4장(목적세) | ○구세 부과·징수 규칙 |
|      |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구세 감면조례     |

#### 분법 (3개 법, 3개 자치법규)

| 법            | 자치법규           |
|--------------|----------------|
| 지방세기본법 (제정)  | ○구세 기본조례 (제정)  |
| 지방세법(전부개정)   | ○구세 조례 (전부개정)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 ○구세 감면조례(전부개정) |

- 주요 제정내용은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의 제1장 총칙부분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로 신규 제정

-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반영하여 용어정의, 구세 세목 등을 규정
  -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미납구세 등의 열람,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등을 규정
  - 체납처분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압류 및 해제, 처분, 회생 절차 등의 처리 등을 규정
  -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구세 과세전적부 심사, 이의신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구성
-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안이며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준칙안에 의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지방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